

# 수출제한현황 및 향후 운용방향

- 수출입공고상 수출추천품목을 중심으로 -

孫    炳    憲\*

## 목    차

- I. 序
- II. 수출입공고 운용체계
- III. 수출금지품목
- IV. 수출추천품목
  - 1. 추천품목의 수출실적
  - 2. 추천목적
  - 3. 추천지역
  - 4. 추천기관
- V. 수출입공고상 수출추천품목 변동추이
- VI. 수출추천제도의 수출관리에서의 기능
- VII. 수출추천제도 관련 수출절차간소화제도
  - 1. 포괄수출승인
  - 2. 추천기관 지방확대
  - 3. 추천수수료 인하
  - 4. 무역자동화 추진
- VIII. GATT상의 의무 및 외국의 제도
  - 1. GATT상의 수출관리 및 규제에 대한 의무
  - 2. GATT/TPRM에서의 우리나라의 수출관리제도
  - 3. UR협상에서의 수출관리제도 관련협상
  - 4. 외국의 수출관리제도
- IX. 수출추천품목 향후 운용방향
- ※ 참고자료

## I. 序

지난 몇년간 한국경제는 급속한 변화를 겪었다. '86~'88년에는 3低好況에 힘입어 연평균 12.8%의 높은 경제성장과 경상수지도 사상최초로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러한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선진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지난 '87년 “민주화선언” 아래 격심한 노사분규와 함께 연평균 20% 이상의 임금상승이 야기되었으며, 기업은 자체 기술개발의 소홀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로 기술적 애로에 봉착하게 되었고, '89년 이후 수출보다는 내수 주도에 의해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에서 한국 경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개방의 가속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 무역정책기조인 「균형적 교역확대」를 위하여 수출부문에서 중요한 수출관리수단의 하나로 운용되고 있는 수출입공고상 「수출추천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운용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商工部 貿易政策課 事務官

## II. 수출입공고 운용체계

### 1. 법적근거

대외무역법 제18조(수출입공고 등) ① 항에서 상공부장관은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공고(수출입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고할 사항으로 수출입물품의 자동승인품목, 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제한승인품목에 대한 수량·금액·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내용, 그리고 수출입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0-2조(수출입공고의 시행절차)에서는 동 공고를 한국무역협회가 발행하는 「일간무역」에 게재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2. 수출제한승인품목 운용현황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승인품목은 '92년 7월 1일 현재 HS 6단위 기준 1,262개 품목으로 총수출품목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품목 중 수출금지품목은 수출할 수 없으며, 수출추천품목은 수출입공고상 수출요령에 따라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1〉 수출입공고상 수출품목구분 및 품목수  
(HS 6단위 기준)

계	수출자동 승인품목	수출제한 승인품목		
		소 계	금지품목	추천품목
5,019	3,757	1,262	28(13)	1,247
(100.0)	(74.9)	(25.1)	(0.6)	(24.9)

※ ( )안의 숫자는 일부 추천품목

### III. 수출금지품목

우선 수출금지품목을 보면 HS 6단위 1개 품

〈표 2〉 수출입공고상 수출금지품목  
(HS 6단위 기준)

계	완전금지	기타자동	기타추천	기타자동, 추천
28	-	15	6	7

목당 완전수출금지품목은 없으며, 그 중 일부가 자동승인 또는 추천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금지는 대부분이 국내자원 및 환경보호 목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고래고기의 경우 IWC(국제포경위원회) 협약상 상업적 포경금지에 따라서, 개의 모피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를 위해 각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밖의 금지품목으로는 잔디, 지의, 해초류, 인초류, 헛류, 갈포, 자연석, 목탄, 원목, 천연코르크, 견웨이스트 등이 있다.

## IV. 수출추천품목

### 1. 추천품목의 수출실적

추천품목의 추천실적('91)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38.6%로 1/3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추천관련 HS 6단위 품목의 수출실적은 총수출의 66.7%로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관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수출추천품목의 추천 및 수출실적

(단위 : 100만달러)

수출실적구분	'89	'90	'91
총 수 출 (A)	62,377	65,016	71,870
추천관련 HS 6단위(B)	38,046	38,829	41,600
추천관련 HS 4단위(C)	39,697	40,515	43,293
추천품목 추천실적(D)	22,703	26,515	27,739
총수출중 비중(D/A)	36.4%	40.8%	38.6%
HS 6단위 비중(D/B)	59.7%	68.3%	66.7%
HS 4단위 비중(D/C)	57.2%	65.4%	64.1%

〔자료〕 추천실적 : 각 추천단체, 수출실적 : 관세청 통계

수출추천관련 HS 6단위 품목의 수출금액 단위별 품목수와 수출실적('91)은 100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666개 품목(52.8%)이 추천품목 총수출의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품목(자원·환경보호, 국내수급조절 등의 품목 등)은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표 4〉 추천품목의 금액단위별 품목수 및 수출실적('91)  
(단위 : 100만달러, HS 6단위 기준)

연간수출규모	품목수	%	수출액	%
계	1,262	100.0	41,600	100.0
1억달러 이상	81	6.4	31,994	76.9
100만달러 이상	666	52.8	41,472	99.7
100만달러 이하	596	47.2	128	0.3
10만달러 이하	307	24.3	6	0.1
5만달러 이하	250	19.8	2	0.0
1만달러 이하	176	13.9	0.2	0.0
0만달러 이하	109	8.6	0	0.0

(주) 추천품목에는 금지품목이 포함됨.

## 2. 추천품목

수출입공고상 수출추천품목의 추천목적은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섬유쿼터협정 : 현재 우리나라는 MFA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 EC, 캐나다 및 북유럽 3국(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과 양자간 섬유협정을 체결하고 동 국가들에 대한 섬유관련품목 수출쿼터를 관리
- 나. 자율규제(VERs ; Voluntary Export Restraints) : 과당경쟁방지를 통한 수출업계의 채산성 도모 및 선진국의 수입규제에 사전대처하기 위하여 수입국의 정부 또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체결한 협정에 의하거나 자율적으로 수출가격 및 수량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자율규제는 정부 간협정, 업계간협정, 독자적 자율규제에 의거 수출관리
- 다. 수출동향 감시 : 협정 및 자율규제가 해제된 품목중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가 계속 예상되는 품목의 수출물량 및 가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수출제한
- 라. 디자인 보호 : 디자인 보호 지정물품 수출시 인정기관의 인정을 위한 수출추천
- 마. 자원 및 환경보호

바. 국내수급조절 : 국내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출제한

사. 과당경쟁방지 및 수출질서유지 : 품목별 추천 단체에서 수출업계의 요청에 따라 수출가격 및 물량을 모니터링하여 관련업계의 수출질서를 유지

추천목적별 품목수는 섬유쿼터협정, 정부 및 업계간협정 등 교역상대국과의 협정에 의한 추천품목이 805개 품목으로 전체 추천품목의 64.6%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체적인 수출 관리를 위하여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이 442개 품목으로 전체의 35.4%를 점유하고 있다.

〈표 5〉 추천목적별 품목수

추천목적	(1)	%	(2)	(3)	1+2+3	%
			(2)	(3)	1+2+3	
계	1,247	100.0	352	21	1,620	100.0
협정에 의한 수출제한	805	64.6	3	0	808	49.8
- 섬유협정(MFA)	749	60.1	0	0	749	46.2
- 정부간협정	44	3.5	3	0	47	2.9
- 업체간협정	12	1.0	0	0	12	0.7
자율적 수출제한	442	35.4	349	21	812	50.2
- 독자적 자율규제	205	16.4	49	0	254	15.7
- 수출동향 감시	28	2.2	35	0	63	3.9
- 디자인 보호	1	0.1	7	0	8	0.5
- 국내수급조절	82	6.6	64	0	146	9.0
- 차원보호	23	1.8	0	0	23	1.4
- 과당경쟁방지	103	8.3	194	21	318	19.6

※ HS 6단위 1개 품목에 대하여 추천목적이 겹치는 경우 상기 순위에 의거 집계함.

## 3. 추천지역

추천지역은 세계 전지역제한과 일부지역제한으로 구분되며, 전지역 추천품목은 주로 농·림·수산물, 광산물로서 자원보호, 과당경쟁방지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추천하고, 일부 공산품의 경우에도 수급조절, 동향감시를 목적으로 전지역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 한편 일부지역을 선별적으로 추천하는 품목은 MFA, VERs, 동향감시 등의 목적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제한지역은

〈표 6〉 추천지역별 품목수 및 수출실적  
(HS 6단위 기준)

구 분	계	전지역 제한	일부지역 제한
총추천품목수	1,247	266	981
	(100.0)	(21.3)	(78.7)
추천실적	27,739	12,841	14,897
(100만달러)	(100.0)	(46.3)	(53.7)

거의 선진국에 해당되고 있다.

#### 4. 추천기관

현재 수출추천품목은 총 37개 기관에서 추천되고 있으며, 이에는 3개 정부기관(건설부, 동자부, 산림청)과 34개 단체에서 각각 소관품목을 추천하고 있다. 이를 세분하여 보면 상공부 산하단체가 22개 단체로 추천품목의 90%, 추천실적의 95.3%를 점유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정부기관별 수출추천단체  
(HS 6단위 기준)

구 분	추천기관	추천품목	%	'91추천실적 (100만달러)	%
상공부	22	1,134	89.9	26,429	95.3
-기초	6	249	19.7	2,443	8.8
-기계	3	16	1.3	5,738	20.7
-전자	1	18	1.4	1,953	7.0
-섬생	12	851	67.4	16,295	58.7
수산청	5	29	2.3	949	3.4
산림청	3	22	1.7	74	0.3
농림수산부	3	10	0.8	159	0.6
동자부	3	62	4.9	128	0.5
건설부	1	5	0.4	0	0.0
계	37	1,262	100.0	27,739	100.0

(주) 추천품목에는 금지품목이 포함됨.

#### V. 수출입공고상 수출추천품목 변동추이

수출추천품목은 '86년까지는 소폭 감소추세였으나, '87년에 다소 증가하였으며 '88년에는 수출입공고상 품목분류체계가 CCCN 4단위에서 HS

6단위로 변경되면서 전년보다 약 1,000개 품목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89년 이후에는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왔으며, '91년에는 자율규제의 해제에 따라 8개 품목이 자유화되고 52개 품목이 HS 6 단위중 일부품목 또는 일부지역이 자유화된 반면, 7개 품목은 과당경쟁방지를 위하여 제한지역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92년에도 자율규제의 해제에 따라 8개 품목이 자유화되었으며, 38개 품목이 일부 또는 일부지역이 자유화되어 전체 수출추천품목은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 VI. 수출추천제도의 수출관리에서의 기능

수출추천제도는 수출관리 목적달성을 위한 순기능을 가진 반면 역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

구 分	순 기 능	역 기 능
추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관리목적 달성</li> <li>- 교역대상국과의 협정</li> <li>- 수출동향 관리로 과당경쟁 및 덤핑 수출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로운 수출의 제한</li> <li>- 수출참여 제한 및 가격, 수량 규제</li> <li>- 추천절차에 따른 시간, 노력 낭비</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와 수출업체와의 중간역할 수행</li> <li>- 정부시책 업계전파</li> <li>- 업계이익 대변</li> <li>○ 수출지원 및 질서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 및 인력 파생</li> <li>○ 수출실적이 큰 업체 위주 운영 가능성</li> </ul>
추천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기관 방문시 수출관련 해외정보 획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지지역 수출업체의 경우 추천절차 애로</li> </ul>
추천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기관 운영예산 확보 및 수출증대활동</li> <li>- 수출관련 정보수집 및 회원사 배포</li> <li>- 덤핑피소시 공동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원가 부담으로 국제경쟁력 저하 우려</li> <li>○ 추천단체에서 불필요한 추천품목 고수 가능성</li> </ul>

서 어느 일면만을 강조하여 추천제도의 장단점을 논할 수는 없으며, 개별품목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추천 필요성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VII. 수출추천제도관련 수출절차간소화제도

수출추천제도가 수출관리차원에서 운용됨에 따라 수출증대의 효과를 거두는 반면 이로 인하여 수출업체는 추천을 위한 추천기관 방문 및 추천수수료 납부로 시간 및 경기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추천단체의 협조하에 수출절차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포괄수출승인

포괄수출승인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3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3-1-7을 근거로 하여 해당 수출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동일 추천서상의 자동승인품목 포함)으로 일정한 결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동제도는 수출품목이 추천품목인 경우 무역업자가 추천기관에서 수출추천을 받고 다시 외국환은행에서 수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추천의 경우 포괄수출승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 추천기관 지방확대

수출입공고상 추천품목에 대하여는 수출입공고 제8조(추천요령의 공고)에 의거 추천주무관서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은 사전에 상공부장관의 합의(승인)를 얻어 추천요령을 공고하여야 하며, 동추천요령에는 추천장소를 비롯하여 추천대상품목, 추천범위 및 기준,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 추천장소는 수출추천단체의 본사가 대부분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지방수출업자의 경우에는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천단체의 추천권을 추천단체 지방사무소(출장소) 또는 수출조합합동사무소에 위임하거나 무역협회와 추천권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22개 단체)하여 동협회 9개 국내지부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서울, 각각할시 및 도청소재지, 이리, 여수, 강릉 등 대부분의 지방 주요도시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추천수수료 인하

정부에서는 추천수수료의 인하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88년 7월 수출업계의 부대경비 절감에 의한 수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추천수수료 징수기준을 조정하여 수출입 추천수수료 최고요율 인하, 회원 및 비회원간 차등징수제 폐지, 일정액 이하 섬유류 수출업체 징수면제 및 일부단체의 경우에는 건별징수에서 실적회비(수출실적을 근거로 산정)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추천수수료 조정은 추천단체들이 수수료 인하 및 추천해제품목 증가에 따른 예산수입 감소로 단체운영에 어려움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연간 약 11억원의 수출업체 부담이 경감되었다.

〈표 8〉 추천수수료 최고요율 조정추이

(단위 : 원/US \$)

구 분	'82	'83	'84	'88. 7	인하율
수 출	1.2	1	0.4	0.3	25%
수 입	1.4	1	0.8	0.4	50%

### 4. 무역자동화 추진

무역자동화는 무역업무 처리를 전통적인 「문서의 작성과 전달」 방식에서 「전자문서화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전송」 처리함으로써 문서없는 무역절차의 실현을 추구하는 제도로서

- 수출입처리시간의 단축 및 부대경비의 절감
- 무역화물유통의 원활화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부담 완화
- 중소무역업체의 소량다품종 수출촉진 및 지방무역업계의 균형발전
- 국제적인 무역자동화 추세에 대응
- '94년 1월로 예정된 국내 VAN 시장개방에 능동적 대처

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역자동화사업은 관련법률이 시행되는 '92년 7월 1일 이후 수출관련 기본업무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92년 하반기~'93년 무역자동화망의 전국확산, '94~'95년 전 무역업무로의 확대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출추천업무도 동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무역자동화로 실시될 경우 수출업체는 추천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업체의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추천절차에 따른 시간 및 경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이다.

## VIII. GATT상의 의무 및 외국의 제도

### 1. GATT상의 수출관리 및 규제에 대한 의무

세계 각국의 수출입규제에 관한 일반적 경향은 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국제규범에서도 이와같은 수입제한조치들을 주요 관심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출규제문제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GATT내에서도 수출규제 금지에 관한 상당수의 규정을 갖고 있어 수출규제가 가볍게 취급될 문제는 아니다.

각국의 일반적인 수출제한의 주요 목적으로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국가안보를 들 수 있다.

수출과 관련된 GATT 의무규정은 수입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제1조 최혜국대우 의무, 제11조 수량제한금지 의무, 제6조 및 제16조의 보조금·반덤핑판세규정, 제8조 및 제9조의 통관수수료 및 관세행정절차에 관한 규정 및 제20조에 GATT상의 수출통관의무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다.

GATT상 주요 의무중 수출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GATT 제2조의 관세양허의무(수출 세 부과), 내국민대우의무(국내 판매상품과는 다른 방법으로 조세 부과) 조항이 있으며, 예외규정으로는 제20조에서 공중도덕 보호(마약단속),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금 또는 은과 관련된 조치, 일정한 독점의 실시 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국가적 귀중품 보호,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 특정상품협정을 위한 경우가 있으며, 제20조 (i)에는 국내 가공산업에 불가결한 수량의 확보를 위한 국내원료의 수출제한, 제20조 (j)에는 전반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를 위해 불가결한 조치, 제21조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 2. GATT/TPRM에서의 우리나라의 수출관리 제도

'92년 7월 8일~9일 양일간 GATT에서 실시한 우리나라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시 우리나라 수출관리제도에 관한 GATT의 평가는 “한국이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방적 수출제한조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교역상대국의 수입쿼터, 반덤핑의 자의적 운영 등 악화된 교역환경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수출제한조치가 취하여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GATT의 우리나라 무역정책에 관한 보고서중

〈SUMMARY OBSERBATION〉 부분의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28. 수출제한조치들의 상당부분은 정부간 또는 업계간 협정 및 반덤핑조치 부과품목임.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수입국의 가능한 조치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정부에 의해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 수출규제조치가 취하여짐.
33. 한국은 수출제한의 사용과 더불어 국산화 제도 및 수입선다변화제도는 민감한 부문에 있어 관리무역을 오히려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3. UR협상에서의 수출관리제도 관련협상

UR의 Safeguard 협상에서 논의된 「회색조치의 범위 및 철폐기간」에 관한 던켈의장(안)에 의하면 VERs(자율규제) 및 유사조치의 금지를 규정하면서 GATT규정 또는 GATT하의 협정 등에 의한 조치는 동협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VERs는 협정 발효후 4년(최장 8년) 이내에 철폐하나 체약국간 쌍방합의 및 SG위원회에 통보·수락된 하나의 특별조치는 예외로 하되 '99년 12월 31일까지는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VERs는 GATT 19조(Safeguard)를 회피한 회색규제조치(Grey Area Measures)로 80년대에 새롭게 증가한 수입제한의 형태이며, 동협상의 주요쟁점의 하나였다.

던켈 최종안에서 정부간 협정, 업계간 협정 등에 의한 수출자율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수출국이 수출업자간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UR의 「섬유협상」에 관한 의장(안)에 의하면 '93년부터 2002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MFA를 철폐하고 2003년에는 완전히 GATT체제로 복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완전복귀 이전까지는 잠정 SG가 선별적으로 발동가능한 반면

최소증가율 1%가 반영되지 않아 다량수출국의 섬유쿼터 기득권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 4. 외국의 수출관리제도

미국의 수출제한 관련법령 및 공고로는 수출관리법(The Export Control Act)에 의한 수출관리규정(The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거래규제규정(The Transaction Control Regulations) 및 상품규제목록(The Commodity Control List)이 있으며, 상무성에서 관련규정, 목록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수출제한내용으로는 거래규제규정에 의한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등 특정지역에의 수출금지, 국가안보 및 대외정책 수행, 회소자원(국내채굴원유, 농산품 등)의 유출제한을 통한 국가경제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상품규제목록에 모든 규제품목을 등재하고 있다.

수출승인은 일반승인(자동승인과 유사), 인증승인(수출추천과 유사) 및 절차간소화를 위한 조건부 일반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수출제한 관련법령 및 공고로 外國爲替, 외국무역관리법 및 수출무역관리령에 의한 고시 및 輸出入取引法에 의한 通產省令이 있으며, 통산성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수출허가 또는 승인하고 있다.

국가안보 및 대외정책상 필요한 품목과 특정 지역 및 특정물품(주로 전략물자)에 대하여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수급, 과당경쟁방지, 국제협정 관련물품 및 수출금지품목에 대하여 수출승인을 하고 있다. 輸出入取引法에서는 수출업자 자율적으로 과당경쟁 배제, 수출거래질서의 확립,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동법 시행령에 해당물품을 지정하고 省令에 세부 수출요령을 규정하여 수출승인을 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입출항 물품분류심사·결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수출제한품목을 입항허가류, 출항허가류, 입항통제류, 출항통제류, 출항금지류

로 구분하여 경제부 국제무역심사위원회에서 공고하고 무역국에서 수출제한품목 공고를 위한 심사보고와 수출신청에 따른 허가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무역국의 허가를 얻어 등록한 업체인 감증을 가진 수출업체 등은 경제부가 공고한 물품을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허가가 면제되며, 해당업체는 사후보고도록 하고 있다.

## IX. 수출추천품목 향후 운용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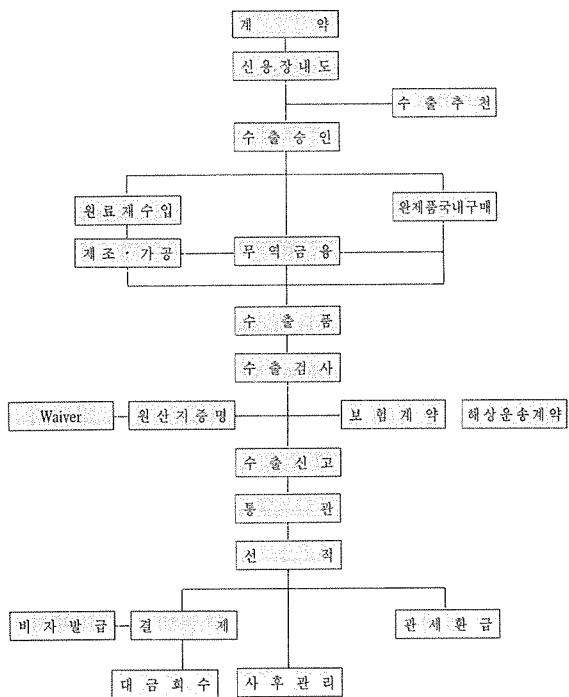
- 대외무역법 및 국제규범상의 「자유롭고公正한 무역조장」원칙과 「무역의 확대균형」 정책 기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제한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협정 준수 및 수출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며, 수출추천제도로 인한 수출 업계의 절차부담에 대하여는 수출절차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추천제도의 역기능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최근 수년간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품목이 연간 50개 내외로 꾸준히 자유화되어 오고 있어 추천품목의 대폭적인 축소 등 급격한 변화는 수출관리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해당 추천단체의 자율적인 추천품목 조정을 유도함이 필요하다.
- '93년 수출입공고의 운용은 추천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퀘터 등 협정관리 관련품목은 운용요령을 개선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며 관련 추천단체에서 해제가능성을 제시한 약 50개 품목에 추가하여 그간 축적해온 추천품목 관련 데이터베이스자료의 정밀분석을 통하여 국내수급조절 및 자원·환경보호 품목중 추천의 필요가 감소된 품목, GATT/TPRM시 일방적 수출제한으로 지적된 바 있는 동향 감시, 과당경쟁 방지 등을 위한 품목 및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 중 계속적인

수출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연말 수출입공고 개정시 해제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국제규범에의 일치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GATT상의 수출관리 및 규제에 대한 의무와 관련한 각국의 관심이 아직까지는 수입제한조치가 주대상이며, 미국, 일본, 대만 등 각국에서도 자국의 수출관리 목적으로 필요한 품목 및 지역에 대하여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에 대한 교역대상국의 수입규제조치가 상당부분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UR의 수출관리 관련협상의 타결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국제규범에의 일치를 추진함이 바람직한 것이다.

### 〈참고자료〉

#### ※ 수출절차상 수출추천



## ※ 정부기관별 수출추천품목 및 추천기관

기관 및 단체수	추천품목	추천기관
상 공 부 : 25개		
-기초공업국	강관류 철강재 철선류 금속양식기류 컨테이너 석유화학제품류	한국강관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한국컨테이너공업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기계공업국	(6) 안경 및 안경테 자동차 선박류	한국광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선박공업협회
-전자전기공업국	(3) 전자제품	전자공업진흥회
-섬유생활공업국	(1) 섬유제품류 섬유직물류 신발류 피혁제품류 생활용품류 기구류 귀금속 및 보석류 타이어(신품) 타이어(중고품) 앨범 공예품 시멘트	한국섬유제품수출조합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한국신발협회 한국피혁제품수출조합 한국생활용품수출조합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 이리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대한타이어공업협회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한국공예협동조합(연) 한국양회공업협회
농림수산부 : 3개	통조림 및 깐밤 누에고치 및 생사등 벼의 짚과 껍질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 한국생식수출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동 자 부 : 3개	광산물 석재 및 석제품 무연탄	대한광업회 수출석재생산업조합 동력자원부
건 설 부 : 1개	골재류	건설부
산 림 청 : 3개	종자 산림 부산물 목재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수산청소관 : 5개	수산물 내수면 어류 원양어획물 망 및 끈류 굴통조림	한국수산물수출조합 한국내수면어업협회 한국원양어업협회 대한어망공업협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추천기관별 추천품목 및 추천현황

추천기관	추천품목수		추천실적 (천불) '91	추천건수 '91
	HS4	HS6		
한국조선공업협회	1	3	5,568,729	101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89	485	4,723,001	158,407
한국섬유제품수출조합	42	248	4,112,997	155,925
한국신발산업협회	6	26	3,092,174	40,522
한국전자공업진흥회	7	18	1,952,918	8,791
한국피혁제품수출조합	6	19	1,585,078	47,632
한국생활용품수출조합	18	50	983,818	46,840
한국콘테이너공업협회	1	1	959,150	622
대한타이어공업협회	1	6	816,409	6,505
한국수산물수출조합	9	17	708,701	7,782
한국철강협회	32	199	574,475	5,782
한국금속양식기수출협회	4	17	424,159	11,070
한국강관협회	3	23	419,589	5,180
한국공예협동조합(연)	2	4	389,215	42,436
한국수출석재생산업조합	2	9	230,404	7,802
한국원양어업협회	2	8	186,966	220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	3	4	138,568	707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2	5	113,369	9,259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	2	18	106,800	5,208
대한어망공업협회	3	12	91,340	3,741
한국양회공업협회	1	2	86,723	431
이리귀금속가공협동조합	5	14	73,893	5,747
산림조합중앙회	4	4	73,507	617
대한광업회	29	54	71,594	935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3	9	65,888	3,806
한국자동차공업협회	1	8	55,927	53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1	1	50,180	2,33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	1	43,894	56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	1	19,746	222
한국내수면어업협회	1	1	9,682	118
동력자원부	1	1	5,600	2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1	2	2,240	175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1	1	1,686	5
한국생식수출조합	3	3	250	0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6	11	0	0
건설부	1	6	0	0
산림청	1	1	0	0
계	279	1,262	27,738,670	579,543

\* 섬유제품, 직물, 생활용품, 피혁, 신발, 어망관련 품목 중에는 HS 6단위 1개 품목을 2개 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음

## 특집

### ※ 지역별 주요 수출제한품목

지역별	MFA	VERs	동향감시	기타
미국	섬유류	철강재, 신발	2종 양식기, 합성제 가방, 혁제의류, 안경테, VTR, 낚시 대, 신변용품	수산물(굴)
캐나다	신발			
EC	신발류, 1종 양식기, CPT 전자렌지	합성제가방, 신변 용품, 앨범, V-Tape VTR, 혁제의류		
북구3국				
일본	견적물	니트쉐타, 낚시대	신발류, 수산물, 깐빔	
대만	자동차, 사과, 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PE 직물	벨베트직물		
호주		합성제가방		
전지역		콘테이너		

### ※ 섬유쿼터협정품목 변동추이

년도	미국	EC	캐나다	오지리	놀웨이	핀란드	스웨덴	계
88	137	47	17	8	6	3	12	230
89	135	47	17	8	6	3	12	228
90	132	47	17	8	6	3	12	225
91	131	47	18	8	4	3	12	223
92	131	47	18	8	4	2	-	210

### ※ 수출자율규제품목(VERs)

(단위: 품목)

연도	정부및 업계간협약	독자적 자율규제	계
74	-	1	1
76	1	-	1
77	4	2	6
78	7	5	12
79	8	7	15
80	8	8	16
81	8	9	17
82	8	12	20
83	9	14	23
84	11	13	24
85	11	14	25
86	8	15	23
87	7	24	31
88	9	23	32
89	9	24	33
90	8	21	29
91	8	21	29
92	6	3	9

(단위: 품목)

년도	미국	EC	캐나다	오지리	놀웨이	핀란드	스웨덴	계
80	109	45	19	7	10	7	13	210
81	109	45	19	7	10	7	16	210
82	109	45	17	8	10	7	16	212
83	108	55	17	8	9	7	19	221
84	108	55	17	8	9	5	19	221
85	113	55	17	8	8	5	19	225
86	131	55	17	8	8	5	19	243
87	131	47	17	5	8	3	12	223

### \*'92년 현재 수출자율규제 품목 현황

구분	자율규제 품목 및 지역
정부간 협정 (3)	견적물(일본), 신발(EC), 자동차(대만)
업계간 협정 (3)	1종 양식기(서독, 영국, BNL), CPT(EC), MWO(EC)
독자적자율규제 (3)	철강재(미국), P.E 직물(중동, 동남아 등), 신발(미국, 캐나다)

우리도로에는 우리나라 타이어를 ....